

자진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

접수번호		접수일시(접수시간 포함)	
자진 신고인	성명(법인명) 주소(법인소재지)	생년월일(법인 · 외국인등록번호) (휴대)전화번호	
기존 신고한 내용	신고필증 관리번호		신고필증 발급일
	매도인 (임대인)	성명(법인 · 단체명)	생년월일(법인 · 외국인등록 · 고유번호)
	매수인 (임차인)	성명(법인 · 단체명)	생년월일(법인 · 외국인등록 · 고유번호)
	개업공인 중개사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 · 외국인등록 · 고유번호)
	거래(임대) 부동산 유형	[]토지, []건축물, []토지 및 건축물, []공급계약, []분양권매매, []입주권 매매 []주택 임대차 계약	
	거래(임대) 부동산 내역		
	계약 체결일		
	거래가격 (보증금 · 월 차임)		
자진 신고할 내용	위반유형	[]가격 허위신고, []가격외 허위신고, []미신고 · 허위신고 요구, []허위신고 조장 · 방조, []외국인등 취득 · 보유 미신고 · 허위신고	
	위반경위 및 내용	(예시) 2016.6.16일 15시경 ○○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분양권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4억원(분양금액+프리미엄)이었으나, 3억8천만원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하였으며,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며, 귀 신고관청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계약서, 거짓신고 합의서,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. 진술서, 확인서, 그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.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, 통화기록, 팩스 수 · 발신 기록, 수첩 기재내용 등 4.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	